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전국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 조사

산청군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

주 무 열

명성정형외과 물리치료실

김 종 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배 성 수

An Investigation on the Consciousness for th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by Public Health Center's Physical Therapy in Korea

Ju, Mu-Yeol, P.T., M.S.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Sancheong-gun Public Health Center

Kim, Jong-Soon, P.T., M.S.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Myungsung Orthopaedic Surgery

Bae, Sung-Soo, P.T., Ph.D.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Rehabilit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

< Abstract >

Th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CBR) of public health center(PHC) has been considered as the one of the alternative medical services which is adequate to our rea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rve basic data in order to strengthen the CBR of PHC. This study was investigated on 191 samples of 95 physical therapists, 35 physicians, and 61 nurses who work at PHC. Data were collected for 40 days from January 10 to February 20, 200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level of CBR of sample specialists was very high as about 85% of the total number studied. Also the number of physical therapists at PHC, who had intention of participation to CBR, was very high as almost 92%. Second, specialists more than a half of sample group thought that two therapists and one assistance per one PHC were needed for serving with sufficient CBR services. Finally, various additional strategies were proposed by sample specialists. In order to activate the CBR of PHC,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related laws, to stimulate teamworks between rehabilitation specialists, and to establish so called 'public health therapists'. Also we must reinforce the CBR instruction for PHC therapists and the education for health center officer.

I. 서 론

정부는 1951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립의료법」

제정, 1956년 법률 제406호 「보건소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1962년에는 더 나아가 보건소의 업무와

보건인력의 구성이 규정되었다(장정훈 등, 1992). 그 이후 정부에서는 1995년 보건소를 일차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 명시하여 지역사회의 재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에는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윤배중, 1997).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보다 적은 경비로 간편하고 폭넓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환자중심의 새로운 의료전달체제로서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김연희, 1993; 이해영, 2000).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이란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재활사업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직접 담당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지역사회의 자원, 즉 장애인 자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가동 활용하고 전문가에 의해 훈련된 인력과 지역사회 조직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정을 지속적으로 도움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양숙자, 1997; Krol, 1984; Mike, 1991; Miller, 1984; Sabourin, 1988).

CBR담당자는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의사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현재에는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만이 활성화 되어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CBR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제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특히 물리치료사에 의한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효과적인 수행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찬문, 1997; 배성수 등, 1999).

우리 나라에서 CBR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역 내 기관으로서의 보건소와 지역종합복지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김동연, 2000; 김병식, 1998), 먼저 지역 종합복지관과 그 주요재활요원인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순회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데 비하여 (이정자, 1994; 신상운, 1994), 보건소중심의 재활사업 운영에 대한 논의 및 물리치료사의 재활업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전국 보건소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의사, 간호사들이 CBR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CBR제도 활성화방안을 찾고자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일반적인 특성 고찰, CBR에 대한 이해 도모, CBR에 있어서 물리치료

사의 역할, 그리고 CBR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연구대상자

이 연구의 대상은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의사·간호사로서 전국 보건소를 행정단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군 보건소로 비례층화 무작위법으로 표본 추출한 122개를 표집하였다(보건복지부, 2000). 대상이 되는 보건소에 2001년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물리치료사 122부와 의사·간호사에게 122부 배포하여 각각 98부, 99부씩 총 197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 6부를 제외한 각각 95부, 96부 총 191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물리치료사의 경우 25-29세가 13명(13.7%), 30-34세가 41명(43.1%), 35-39세가 22명(23.2%), 그리고 40세 이상이 17명(17.9%)이며, 의사의 경우 25-29세가 6명(17.2%), 30-34세가 15명(42.8%), 35-39세가 10명(28.6%), 그리고 40세 이상이 4명(11.4%)이며, 그리고 간호사의 경우 30-34세가 11명(18%), 35-39세가 33명(54.2%), 그리고 40세 이상이 14명(22.9%)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와 의사·간호사 모두 30대가 66%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물리치료사의 경우 남자가 48명(50.5%), 여자가 47명(49.5%)이며, 의사의 경우 남자가 31명(88.6%), 여자가 4명(11.4%)이며, 그리고 간호사의 경우 남자는 전혀 없고 모두 여자 60명(100%)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는 남·여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으나 의사는 남자가 많으며, 그리고 간호사는 여자로 전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의 유무로 볼 때 물리치료사의 경우 기혼자가 78명(82.1%), 미혼자가 16명(16.8%)이며, 의사의 경우 기혼자가 27명(77.2%), 미혼자가 8명(22.8%)이며, 간호사의 경우 기혼자가 56명(91.8%), 미혼자가 4명(6.6%)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와 의사·간호사 모두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설문지는 기존의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여(김지운, 1999; 심정길, 1994; 장은주, 1996),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물리치료사용 설문지 1부와 의사·간호사용 설문지 1부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1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의 전체경향을 파악하고 연구 설계에 이용하기 위하여 구성요인별 평균값의 문항별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결 과

1. 근무환경

1) 개설 연도 및 근무처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개설된 연도는 주로 1993년에 70곳(73.7%)이 개설되었으며, 1995년 이후에 개설된 곳은 19곳(20%)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의 근무처는 보건소가 70명(73.7%), 보건지소 11명(11.6%), 그리고 보건의료원 10명(10.5%)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조직상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2) 임상근무경력 및 보건소 근무경력

현재 물리치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경력을 조사해 본 결과, 임상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가 15명(15.8%), 6년-10년 43명(45.3%), 11년-15년 27명(28.4%), 16년-20년 6명(6.3%)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치료사로서 보건소 근무경력은 5년 이하인 경우가 37명(38.9%), 6년-10년인 경우가 58명(61.1%)이었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의사와 간호사의 구성비율을 먼저 살펴보면, 의사는 35명(36.5%), 간호사는 61명(63.5%)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들의 경력을 조사해 본 결과, 임상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가 19명(19.8%), 6년-10년 31명(32.3%), 11년-15년 27명(28.1%), 16년-20년 10명(10.4%)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간호사로서 보건소 근무경력은 5년 이하인 경우가 39명(40.6%), 6년-10년 28명(29.2%), 11년-15년

18명(18.8%), 16년-20년 6명(6.3%)이었다. 이와 같이 의사·간호사의 보건소 근무기간은 10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물리치료사의 공무원 신분 및 직급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공무원들은 정규직이 77명(81.1%), 비정규직이 18명(18.9%)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비정규직 공무원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단, 물리치료사 중 정규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비정규직 공무원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들 정규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의료기술직 9급이 21명(22.1%), 의료기술직 8급이 46명(48.4%), 의료기술직 7급이 8명(8.4%)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공무원 응답자는 일용직이 15명(15.8%), 계약직 2명(2.1%)으로 나타났다.

4) 물리치료실 직원 현황

현재 전국 보건소 근무 물리치료사 현황을 살펴보면, 물리치료사가 1명인 경우가 전체의 85.3%, 2명인 경우가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원이 없는 곳이 83.2%, 보조원이 있는 곳이 14.7%로 나타났으며, 보조원이 있는 곳도 1명인 경우가 12곳(12.6%)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근무자 현황을 보면 대체로 물리치료사 1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보조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5) 물리치료실 직원편성의 적절성 및 구성방향

현재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근무자가 적절하느냐의 질문에 '매우 적당하다' 13명(13.7%), '다소 적당하다' 7명(7.4%), '보통이다' 32명(33.7%), '부족하다' 35명(36.8%), '매우 부족하다' 6명(6.3%)으로 나타났다. 실제 물리치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도 근무인력이 '적당하다' 라는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중 바람직한 증원의 방향에 대해 물리치료사를 1명 더 증원하는 경우가 39명(41.1%), 2명 증원이 6명(6.3%),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였다. 그리고 보조원의 증원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72명(75.8%)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고, 필요하다는 응답자중에서는 1명 증원이

19명(20.2%)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응답자의 50%정도가 물리치료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1명 증원이 가장 많았으며,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는 22%정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2. CBR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표 1. 보건소 근무 물리치료사의 CBR사업에 대한 인식도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계
CBR사업 인식유무	빈도	81	13	1	95
	%	85.2	13.7	1.1	100

1) 보건소 근무 물리치료사의 CBR사업에 대한 인식도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CBR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냐에 대한 물음에 '알고 있다'가 전체응답자의 85.2%이었고, '모른다'가 13.7%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의 CBR사업은 현재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물리치료사의 CBR사업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현재 CBR사업에 대한 참여유무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현재 CBR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냐에 대한 물음에 '참여하고 있다'가 전체응답자의 29.5%이었고, '참여하고 있지 않다'

69.4%로 나타났다. 보건소 근무 물리치료사들은 현행법에 CBR사업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표 2. 보건소 근무 물리치료사의 CBR사업에 대한 참여유무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계
CBR사업 인식유무	빈도	28	66	1	95
	%	29.5	69.4	1.1	100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중 CBR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가 1명인 경우가 전체의 95.6%이었다. 현재까지 참여하는 경우에도 물리치료사가 1명인 경우가 매우 많으며, 물리치료사들에게 향후에 CBR사업에 참여하겠느냐는 물음에 91.6%가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향후 보건소 중심으로 CBR사업이 관련 법규

제정, 제도적 보완, 예산확보 등이 선행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 CBR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은 주로 가정방문 물리치료, CBR사업에 대한 논의, 재활관련프로그램의 공동수행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향후 CBR사업에 대한 참여계획

구 분		참 여	불 참	무응답	계
CBR사업 인식유무	빈도	87	6	2	95
	%	91.6	6.3	2.1	100

보건소 근무 의사·간호사들에게 향후에 CBR사업에 물리치료사의 참여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매우 필요하다' 70.8%, '조금 필요하다' 9.4%, '필요하다' 13.5%이었으며, 물리치료사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보건소 중심으로 CBR사업이 시행될 때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가 팀을 이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었다.

표 4. 의사·간호사가 본 CBR사업에 있어 물리치료사 참여 필요성

구 분		매우 필요	조금 필요	필요	불필요	계
CBR사업 인식유무	빈도	68	9	13	6	96
	%	70.8	9.4	13.5	6.3	100

3) 향후 CBR사업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

전국 보건소 중심 CBR이 시행된다면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물리치료사와 보조원의 인원은 얼마나 필요한가? 이에 대한 물음에 물리치료사는 1명이 17.9%, 2명이 57.9%, 3명이 17.9%이었고, 보조원은 '필요 없다'는 대답이 전체 응답의 40%, 1명이 51.6%, 2명이 7.4%를 나타내고 있다.

실질적으로 향후 CBR사업에 필요한 물리치료사 인원은 2명이 가장 많았으며, 보조원의 경우는 필요 없거나 1명인 경우가 전체의 약 92%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주로 1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CBR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5. 향후 CBR사업에 있어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인원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무응답	계
물리치료사	빈도	-	17	55	17	1	5	95
	%	-	17.9	57.9	17.9	1.1	5.2	100
보조원	빈도	38	49	7	1	-	-	95
	%	40.0	51.5	7.4	1.1	-	-	100

4) CBR사업의 활성화 방안

(1)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들은 전국 보건소 중심 CBR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들간의 우선 순위를 먼저 CBR에 대한 관련 법규 제정,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CBR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인식전환과 팀워조성, 물리치료사의 인원 증원, 그리고 가칭 '공중 보건 물리치료사'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CBR의 정규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홍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보건소장의 CBR에 대한 인식도 재고, CBR사업의 예산 배정 등이 있었다.

(2) 의사·간호사

의사·간호사들은 전국 보건소 중심 CBR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들간의 우선 순위를 먼저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CBR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인식전환과 팀워조성, CBR에 대한 관련 근거 법규 제정, 물리치료사의 인원 증원, 그리고 가칭 '공중 보건 물리치료사'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간호사는 물리치료사들과는 달리 전문가집단의 인식전환과 팀워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반면에, 물리치료사들은 CBR에 대한 관련 법규 제정을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V. 고 찰

본 연구는 CBR사업에 대한 전국 보건소 물리치료사와 의사·간호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전국 보건소를 비례층화 무작위법으로 표본 추출한 122개를 표집하였다(보건복지부, 2000).

본 연구는 전국 보건소 물리치료사와 의사·간호사들의 CBR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물리치료사, 의사·간호사들의 인구통계학적 일반적인 특성과 CBR에 대한 인식도, 참여의사, 필요인원, 활성화방안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간호사중심의 가정방문간호사업(김지윤, 1999)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물리치료사중심의 CBR사업에 대한 연구 역시 가정방문 물리치료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심정길, 1994; 양영애, 1997; 한동욱, 1999)에 대한 것이 보고되었으나, CBR사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할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근무환경 및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전국 보

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122명, 의사·간호사 12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2000).

조사응답 물리치료사의 인적 특성을 보면, 첫째 장은주(1996)의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성비는 남자(51%)가 여자(49%)보다 약간 많았고, 김찬문과 정재훈(1998)의 연구에서는 여자(53.1%)가 남자(46.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남·여간의 구성비율이 남자(51%)와 여자(49%)의 구성비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분포는 장은주(1996)의 연구에서는 연령분포가 25-29세 44%로 가장 많았고, 김찬문과 정재훈(1998)의 연구에서는 30-35세가 56.2%로 가장 많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김찬문과 정재훈(1998)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30-34세가 43%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결혼 유무는 물리치료사와 의사·간호사 모두 기혼자가 약80%정도로 미혼자 약 20% 보다 월등히 많았다.

물리치료실의 환경과 근무 연수를 살펴보면, 첫째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주로 1993년에 74%가 개설되었으며, 지소나 보건소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26%)에 비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74%)가 약 3배 정도가 많았으며, 보건소 근무기간은 약 98%가 10년 이내였으며, 직급도 8, 9급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간호사의 보건소 근무경력도 10년 이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물리치료사와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배성수 등(1999)의 논문에서 CBR수행에서 물리치료사의 정규직화를 84.4%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시하였는데 실제 연구결과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1명인 경우가 전체의 85%였으며, 보조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83.2%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1명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의 인원증원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50%, 그 중 1명의 증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CBR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주체적 요인 즉 물리치료사의 인식 정도 및 참여의사, 둘째, 물리적 조건 즉 기존 업무량과 인원 확보 정도, 그리고 셋째 제도적 뒷받침 즉 법규의 필요성이다.

첫째, 물리치료사의 주체적 준비 정도는 매우 높다. CBR사업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인식 정도 및 참여의사

는 매우 높게 나타나 물리치료 분야에서의 CBR사업 확대가능성은 풍부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CBR에 대한 인식은 '알고 있다'는 응답이 85%이었고, '모른다'는 응답이 14%로 CBR사업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김찬문과 정재훈(1998)의 연구에서 '들어보았다'가 69%, '들어보지 못했다'가 31%로 본 연구보다 수치가 낮게 나온 것과 비교해 볼 때 3년 사이에 물리치료사들의 CBR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의 향후 CBR사업의 참여의사에 있어서 92%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김찬문과 정재훈(1998)의 연구에서는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4%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원 확충을 비롯한 물리적 조건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의 결과(배성수 등, 1999)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 CBR사업에 참여할 물리치료사의 인원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물리치료사가 CBR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30%이었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70%로 현재까지는 물리치료사의 CBR사업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CBR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물리치료사가 1명인 경우가 전체의 9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CBR에 참여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은 의사·간호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물리치료사의 인원은 물리치료사의 경우 58%, 의사·간호사들의 경우 74%가 1명이 더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황완성 등(1998)의 연구에서 필요한 물리치료사의 인원이 3명인 경우가 52%로 가장 많았고, 김찬문과 정재훈(1998)의 연구에서도 필요한 물리치료사의 인원이 3명인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CBR에 필요한 물리치료사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를 보인다.

셋째 CBR에 더 많은 물리치료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인원 확충의 문제와 함께 물리치료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직무 여건의 개선과 CBR사업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관련 법규 제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인원 확충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본 연구자의 예측과는 달리 일선 물리치료사들이 CBR사업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련 법규 제정이라고 답하고 있다. 김찬문과 정재훈(1998)의 연구에서 물리치료사가 CBR의 수행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의 정규직

화와 인력지원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 관련 법규 제정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은 제도적 뒷받침 없는 사업의 확대는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간호사의 참여를 의무화한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직접 접하면서 물리치료사들이 느낀 점과 시급한 인원 확충 역시 일시적 일 수밖에 없다고 느낀 점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전국 보건소 물리치료사와 의사·간호사들의 CBR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물리치료사, 의사·간호사들의 인구통계학적 일반적인 특성과 CBR에 대한 인식도, 참여의사, 필요인원, 활성화방안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남·여간의 구성비는 남자(51%)와 여자(49%)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분포는 30-34세가 43%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물리치료사와 의사·간호사 모두 30대가 66%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물리치료실의 환경과 근무 연수를 살펴보면,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1993년에 74%가 개설되었으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74%, 임상근무 기간이 6년-10년 45%, 보건소 근무기간은 6년-10년 61%로 나타났다.

셋째, 보건소 근무 물리치료사들의 정규직 공무원이 81%, 비정규직공무원이 19%로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이 많아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과 의뢰서비스의 질적 제고, 근무의욕의 제고, 사기 진작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CBR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85%로 매우 높았으며, 향후 CBR사업에 92%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법적·예산상·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CBR이 매우 활성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향후 보건소 중심 CBR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2명이 가장 많고, 보조원 1명이 5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CBR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리치료사들은 CBR사업에 대한 관련 법규 제

정,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CBR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인식전환과 팀워크성, 물리치료사의 인원 증원, 그리고 가치 '공중보건 물리치료사'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 문 헌 >

- 김동연 :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활전문가의 긍정적 신념.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학술세미나.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학생회, 2000.
- 김병식 : 재활의 개념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이해. 국립재활원(편). 98년 지역사회중심재활 보건간호사 교육자료 I. 서울, 국립재활원, 1998.
- 김연희 :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발 및 확대 방안. '93 재활세미나. 국립재활원, 1993.
- 김지윤 : 보건소의 방문보건재활업무 수행정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 김찬문 : 지역사회중심재활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참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4(2); 101-106, 1997.
- 김찬문, 정재훈 : 경기도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인식.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0(1); 75-80, 1998.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문영사, 2000.
- 배성수, 김중선, 이한숙 : 보건소 중심의 물리치료 활성화 모델.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1(3); 123-131, 1999.
- 신상윤 : CBR 적용사례. 제2회 전국장애인종합복지관협의회 워크샵. 전국장애인종합복지관협의회, 1994.
- 심정길 : 가정방문 물리치료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양숙자 : 보건소망을 통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를 위한 재가 장애인의 요구사정에 관한 연구. 1997년도 보건장학회에 의한 연구논문집 19. 서울, 보건장학회, 176-187, 1997.
- 양영애 : 가정방문 물리치료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윤배중 : 보건소의 업무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국립재활원(편). 97년 지역사회재활교육자료 I. 서울, 국립재활원, 1997.

- 이정자 : CBR 적용사례. 제2회 전국장애인종합복지관 협의회 워크숍. 전국장애인종합복지관협의회, 1994.
- 이혜영 : 가정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증적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장은주 : 전국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장정훈 외 3인 : 보건소내 물리치료실 운영의 체계화 방안.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3(1): 59-78, 1992.
- 한동욱 : 가정방문 물리치료의 요구도와 적정 요구내용.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홍완성, 배성일, 김찬문 : 서울시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인식.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5(1), 1998.
- Krol, J. : Principles of th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implementation. Proceedings of the 15th World Congress of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Lisbon, 1984.
- Mike, G. G. : Concept plan for implementation of CBR in urban Environment. Proceeding of Asia and Pacific Regional Conference on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Hong Kong, 1991.
- Miller, J. O. : Community based disability prevention, detection and rehabilitation-Does it work?. Proceeding of the 15th World Congress of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Lisbon, 1984.
- Sabourin, R. :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within the community. 16th World Congress of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Tokyo, 1988.